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」에 따라 우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

- 「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」

⇒「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○ 통합지원본부 설치 목적, 정의, 재난현장 대응 단계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조 ~ 제3조)

○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 ~ 제9조)

○ 재난현장 상황전파,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0조, 제11조)

○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,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, 재난현장의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 ~ 제14조)

○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5조, 제16조)

○ 재난현장 수습·복구체계로의 전환, 재난현장상황파악 및 통보, 현장통제, 통신망 확보, 자원봉사활동, 통합지원본부 철수,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(안 제17조 ~

제23조)

4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5항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예고기간 : 2018. 12. 21. ~ 2019. 1. 9.(20일간)〕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10054(2018. 12. 10.)〕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68669(2018. 12. 11.)〕

5. 검토의견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 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,

○ ‘재난현장 통합지휘소’를 ‘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’로 개정하고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「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」을 준용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재난현장의 조기수습 및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